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9일 17시 10분



목차

목차	2
이전 공지사항	3
2021년도「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」모집안내	3

2021년도「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」모집안내

2021.04.27 조회수 273 등록자 관리자 담당부서 농촌진흥과 담당자 정수미

1. 신청기간: 2021. 4. 28.(수) ~ 5. 7.(금)
2. 모집대상(지원자격)
 -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(우선선발)
 -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
 -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(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)
 -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
 - 농식품부 2021년도「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」신청자(독립경영예정자에 한함) *농식품부 청년창업농에 기 선발되어 영농정착 지원금을 수령중인 자는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
3. 신청방법
 - 신청방법: 신청서 작성 후 방문접수
 - 제출장소: 읍·면동사무소, 농업기술센터(농촌진흥과 귀농귀촌팀)
4. 기타사항
 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
 -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발을 취소함
 - 신청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, 최종선발자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임
5. 선정절차
 - 사업신청 서류검토 후 결과발표: 개별통보
6. 사 업 량: 2명
7. 사업내용
 - 매월 10일(1일 8시간)이상 현장실습교육 이수시 연수비 지원
 - * 연수생에게 80만원 한도/월(20일), 선도농가에게 40만원 한도/월(20일)
 - 연수기간: 3 ~ 7개월 (평균 5개월) * 연수시작 : 2021. 6월 ~
8. 문 의 처: 농촌진흥과 귀농귀촌팀(☎659-4454)
9. 제출서류
 - 연수신청서 [붙임 1],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 [붙임 2],
 - 보안서약서 [붙임 3], 개인정보동의서 [붙임 4]
 -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포함)
 -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
 - 교육 수료증(해당자)
 - 예비 귀농·귀촌인은 해당 증빙서류

첨부파일

전체(Zip)다운로드

📎 2021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모집안내.hwp (271 hit / 23.0 KB) ↓

미리보기

이전글

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

다음글

2021년 제2기 여성문화회관 학습프로그램 수강...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 Web Contents

